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48호로 2024년 5월 31일 우경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안 제2조)
- 나. 예방접종 종류(안 제3조)
- 다.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안 제4조)
- 라. 예방접종의 실시 등(안 제5조)
- 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6. 4.~ 6. 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제3호2)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 안 제3조(예방접종의 종류)에서는 예방접종 지원을 규정함.
- 안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및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 지원

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생략)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류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

병명	횟수	지원대상 (수정)
인플루엔자	연 1회	-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대상포진	차수 집중 포함 평생 1회	- 65세 이상 구민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백일해		-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

- 안 제7조(환수조치 등)부터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까지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 비용 상환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서는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우리 구(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2021년 11월 제9조제5항³⁾을 신설하여 취약계

3) 제9조(필수예방접종)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3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층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인플루엔자 외에도 감염병 전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의 사전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4)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적용 대상⁵⁾에 포함되어 있기에 본 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종류⁶⁾와

4)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백일해 4.~13. (생략) 14. 인플루엔자

5)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6) 예방접종 지원 종류 개요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예방법)

병명	종류	내용
인플루엔자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 - 매년 예방접종 권장
대상포진	-	-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에 의한 수포성 발진이 발생하는 질환 - 5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예방접종 권장
백일해	제2급감염병	- 그람음성간균인에 의한 급성 호흡기 세균성 질환 - 성인일 경우 1회 예방접종 권장

지원 대상자는 합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동 제정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타 법령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제외 규정을 두었기에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음.

-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인플루엔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⁷⁾하여 지원의 폭을 넓힘.
- 또한, 백일해의 고위험군은 1세 미만의 영아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대상자 중 임산부(임신 3기)가 「백일해통합관리지침」(질병관리청)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3곳⁸⁾에서 조례에 백일해를 예방접종 지원 종류로 지정하고 있음.
- 한편, 대상포진은 감염병예방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정한 감염병 대상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임.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7) 서울시 자치구 중 동작구 서초구에서 보훈대상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음.

8) 서대문구, 서초구, 용산구

있어 평균 비용 7만~14만 원(질병관리청 대상포진백신의 국가예방접종도입관련 비용-효과분석 참고)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이는 취약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

-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곳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15개 자치구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참고하여 볼 때, 본 제정 조례의 나이 제한선 또한 합당하다고 여겨짐.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9)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바,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예방접종 종류 중 “대상포진” 같은¹⁰⁾ 경우는 예산편성 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 기초생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생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은평구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도봉구, 마포구, 용산구, 금천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나이 제한 없음)

9) 제26조(협의 및 조정)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질병청 지정 국가 필수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일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참 고 자 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생략)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백일해 4.~13. (생략) 14. 인플루엔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필수예방접종)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3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